

의안
번호

340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0. 18.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40호
- 다. 제출일자 : 2024. 10. 14.
- 라. 회부일자 : 2024. 10. 15.

2. 제안이유

-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을 위해 「서울청년센터 성북」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서울청년센터 성북

나. 위탁예정기간 : 2025. 03. ~ 2028. 02. [3년]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지역 청년 종합상담 운영 및 자원연계로 청년들의 역량개발 강화
- 지역 청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청년 간 소통 등 지원
- 지역 밀착형 청년 공간 및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 운영
- 센터 홍보사업 및 시설관리·운영
- 그 밖에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관련 사업

마. 신청자격 :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4.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5조(시설 설치 및 운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청년센터 성북'(이하 '청년센터')의 개관 예정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서울청년센터 성북 시설 및 사업개요

- ☐ 시설명 : 서울청년센터 성북
- ☐ 위치 : 성북구 종암동 5로
- ☐ 규모 : 건물 연면적 417㎡, 부지면적 198㎡
건물 1개동(지상 5층)
- ☐ 총사업비 : 4,855백만원(국비 775백만원, 시비 4,040백만원, 구비 40백만원)

구분	면적(㎡)	공간구성	조감도
5층	68.65	다목적실(중), 공유부엌	
4층	84.48	다목적실(대)	
3층	89.11	종합상담실, 화상면접실, 다목적실(소)	
2층	93.20	오픈라운지, 회의실	
1층	81.86	운영사무실, 미디어월	

- ☐ 운영인력 : 6명(센터장 1명, 직원 5명)
- ☐ 운영시간 : 월~금 10:00~22:00, 토 10:00~17:00(일요일·공휴일 휴관)
- ☐ 사업내용 : 청년정책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청년지원정보 제공, 청년 커뮤니티 지원
- ☐ 위탁기간 : 3년
- ☐ 위탁예산 : 429,000천원(시비 214,500, 구비 214,500천원)
- ☐ 위탁채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신규위탁)

-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청년지원정보 제공, 청년 커뮤니티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써, 시설 조성계획 수립 및 대상지

매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건축 공사는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형태이며, 현재 서울청년센터는 15개소로 이중 4개소는 서울시에서, 나머지 11개소는 자치구에서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청년센터 타 자치구 운영 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운영방법	개관	비고
1	서울청년센터 관악	관악구 신림동 241-22, 302호	자치구 민간위탁	'20.2.	
2	서울청년센터 금천	금천구 가산동 345-58, G밸리 창업복지센터 1~2층	서울시 민간위탁	'20.2.	
3	서울청년센터 강동	강동구 성내동 87-1(강동역세권 청년주택) 지상2층 일부	자치구 민간위탁	'20.5.	
4	서울청년센터 은평	은평구 통일로 67길 9, A동 2층 불광로1길 2-4, B동 1~4층	자치구 민간위탁	'20.6.	
5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 210	서울시 민간위탁	'20.12.	
6	서울청년센터 노원	노원구 상계동 731-5 KB국민은행 노원금융타워 9층	자치구 민간위탁	'20.11.	
7	서울청년센터 성동	성동구 왕십리로 350, 4~5층	자치구 민간위탁	'20.11.	
8	서울청년센터 마포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마포한강푸르지오 101호	자치구 민간위탁	'20.12.	
9	서울청년센터 광진	광진구 능동로 245 2~3층	자치구 민간위탁	'21.2.	
10	서울청년센터 서초	서초구 반포동 19-11	서울시 민간위탁	'21.10.	
11	서울청년센터 강북	강북구 수유동 269-8, 1~3층	자치구 민간위탁	'22.4.	
12	서울청년센터 강서	강서구 화곡동 1170, 2층	서울시 민간위탁	'22.4.	
13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당산동2가 45-5, 당산동2가 역세권 청년주택 2층	자치구 민간위탁	'23.2.	
14	서울청년센터 도봉	도봉구 창동 3 (무중력지대 시설 활용)	자치구 민간위탁	'23.5.	
15	서울청년센터 양천	양천구 목동 404-1 (무중력지대 시설 활용)	자치구 민간위탁	'23.5.	
예정	서울청년센터 성북	성북구 종암로5길 7	자치구 민간위탁	-	'25.3. 개관 예정
예정	서울청년센터 서대문	연희동 446-27,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3-6층	(협의중)	-	'26. 개관 예정

나. 주요내용

- 2025년 3월 ‘청년센터’가 개관될 예정임에 따라 청년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민간위탁 대상 여부에 대한 타당성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2)에 구청장이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지원

1)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5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지원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 시설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⑥ 청년 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개정 2021.5.6.)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3)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센터’는 서울 청년들에 대한 종합상담 제공, 정책정보 집적 및 연계, 관계망 형성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청년 종합상담 및 공간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청년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라.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 ‘청년센터’의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6조 제1항4) 따라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서는 같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5) 규정에 의거 하여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16조(위탁기관 등) ① 청년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으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